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 번호	18533
----------	-------

제안연월일 : 2026. 4.

제안자 : 문화체육관광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건명	의안 번호	발의자	발의일	심사경과	
				상정	소위 심사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211760	김미애의원 등 10인	'25.7.25.	상정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25.11.17.)
				소위 심사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체육관광법안심사소위원회('26.3.25.)
	2214986	조계원의원 등 10인	'25.12.8.	상정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26.2.23.)
				소위 심사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체육관광법안심사소위원회('26.3.25.)
	2215528	박수현의원 등 12인	'25.12.23.	상정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26.2.23.)
				소위 심사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체육관광법안심사소위원회('26.3.25.)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 3. 27.)는 위 3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국회법 제51조에 따라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2. 대안의 제안이유

전담여행사가 단체관광객을 유치함에 있어 저가여행, 쇼핑강요 등의

문제가 계속 발생하여 여행업계의 공정한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으므로 이러한 행위를 근절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현행법은 전담여행사가 고의나 공모로 관광객 이탈사고를 일으킨 경우 전담여행사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고의나 공모가 없었더라도 단체관광객의 무단이탈이 과다하게 발생한 경우에는 제재수단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전담여행사가 단체관광객 유치 원가를 현저하게 낮추면서 일정 비율 이상의 수수료를 단체관광객이 이용하는 시설 또는 점포에서 수수하는 행위 등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거나 전담여행사가 유치한 관광객이 무단으로 이탈하는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전담여행사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한편, 디지털관광주민증 사업은 특정 지역을 방문하는 관광객에게 해당 지역 주민에 준하는 할인 혜택 등을 제공하여 관광객의 체류기간을 늘리고 소비를 촉진하며 나아가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으나,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운영되고 있어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과 전국적인 확산에 한계가 있는 실정임.

이에 디지털관광주민증의 발급 및 활용에 관한 법적 근거를 신설하여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사업의 지속적인 발전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 가. 전담여행사의 금지행위를 신설하고, 전담여행사가 금지행위를 위반한 경우 또는 전담여행사가 유치한 관광객이 무단으로 이탈하는 사고를 일으킨 경우 전담여행사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며, 업무정지 기간에 전담여행사 업무를 수행한 경우 지정을 취소하도록 함(안 제12조의3제3항·제4항).
- 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담여행사 지정 등에 관한 범정부 차원의 관리 및 문제 상황 대응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력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의3제6항 신설).
- 다. 디지털관광주민증의 발급 및 활용에 관한 법적 근거를 신설함(안 제47조의9 신설).
- 라. 전담여행사의 지정 및 지정 갱신 심사 업무의 위탁 근거를 마련함(안 제80조제3항).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관광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3제4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전담여행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단체관광객 유치 원가를 현저하게 낮추면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 비율 이상을 단체관광객이 이용하는 시설 또는 점포에서 수수하여 여행업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2. 단체관광객을 대상으로 구매를 강요하거나 모욕적인 언행을 하는 행위
3. 전담여행사가 고용한 관광종사원에게 지급하여야 할 비용을 단체관광객이 이용하는 시설 또는 점포에서 수수하는 수수료에서 충당하도록 하는 행위

제12조의3제4항(중전의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취소할”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1호”를 “제1호 또는 제6호”로 하며, 같은 항 제4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제4호로 하

며, 같은 항에 제3호·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4항) 중 “그 밖에 전담여행사의”를 “전담여행사의”로, “지정취소”를 “지정취소·업무정지”로 한다.

3. 제3항에 따른 전담여행사의 금지행위를 한 경우

5. 전담여행사가 유치한 관광객이 여행 목적에 맞지 아니하게 무단으로 이탈하는 사고를 일으킨 경우

6. 업무정지 기간에 전담여행사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4항제5호를 사유로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를 하는 경우에는 무단 이탈자의 수, 이탈률, 이탈 사유, 이탈 사고 횟수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⑥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담여행사 지정 등에 관한 범정부 차원의 효과적인 관리 및 문제 상황에 대한 대응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력할 수 있다.

제47조의9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7조의9(디지털관광주민증의 발급 및 활용)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류형 관광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의 인구감소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일정 요건을 충족한 관광객에게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관광 주민증(이하 이 조에서 “디지털관광주민증”이라 한다)을 발급할 수 있다.

② 디지털관광주민증은 다음 각 호의 혜택을 포함할 수 있다.

1. 지역 내 숙박시설, 음식점, 체험장, 박람회, 관광지 등에서의 할인 혜택
2.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광 관련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관광 관련 프로그램의 우선 이용
3. 관광객 체류 실적에 따른 포인트 적립 및 환급 등 인센티브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디지털관광주민증 운영 실태를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디지털관광주민증의 발급요건, 절차, 제2항에 따른 혜택 내용 및 제3항에 따른 디지털관광주민증 운영 실태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0조제3항제1호의2를 제1호의3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12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담여행사의 지정·갱신 심사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2조의3(전담여행사 지정 등) ① · ② (생략) <u><신 설></u></p>	<p>제12조의3(전담여행사 지정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u>③ 전담여행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단체관광객 유치 원가를 현저하게 낮추면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 비율 이상을 단체관광객이 이용하는 시설 또는 점포에서 수수하여 여행업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u> 2. <u>단체관광객을 대상으로 구매를 강요하거나 모욕적인 언행을 하는 행위</u> 3. <u>전담여행사가 고용한 관광종사원에게 지급하여야 할 비용을 단체관광객이 이용하는 시설 또는 점포에서 수수하는 수수료에서 충당하도록 하는 행위</u> <p>④ ----- -----</p>
<p>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담여행사가 다음</p>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2. (생략)

<신설>

3. (생략)

<신설>

<신설>

4. (생략)

<신설>

<신설>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제1호 또는 제6호-----

1.·2. (현행과 같음)

3. 제3항에 따른 전담여행사의
금지행위를 한 경우

4. (현행 제3호와 같음)

5. 전담여행사가 유치한 관광객
이 여행 목적에 맞지 아니하
게 무단으로 이탈하는 사고를
일으킨 경우

6. 업무정지 기간에 전담여행사
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7. (현행 제4호와 같음)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4
항제5호를 사유로 지정취소 또
는 업무정지를 하는 경우에는
무단 이탈자의 수, 이탈률, 이
탈 사유, 이탈 사고 횟수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⑥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담
여행사 지정 등에 관한 범정부
차원의 효과적인 관리 및 문제

④ 그 밖에 전담여행사의 지정
· 갱신 · 지정취소 및 전담여행
사에 대한 관리 · 감독 등에 필
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
으로 정한다.

<신 설>

상황에 대한 대응을 위하여 관
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력
할 수 있다.

⑦ 전담여행사의-----
-----지정취소 · 업무정지-----

-----.

제47조의9(디지털관광주민증의
발급 및 활용) ① 문화체육관
광부장관은 체류형 관광 및 지
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
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의
인구감소지역을 관할하는 지방
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일
정 요건을 충족한 관광객에게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관광 주민증(이하 이 조에서
“디지털관광주민증”이라 한다)
을 발급할 수 있다.

② 디지털관광주민증은 다음
각 호의 혜택을 포함할 수 있
다.

1. 지역 내 숙박시설, 음식점,
체험장, 박람회, 관광지 등에

제80조(권한의 위임·위탁 등) ①
 · ② (생략)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관광공사, 협회, 지역별·업종별 관

서의 할인 혜택

2.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광 관련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관광 관련 프로그램의 우선 이용

3. 관광객 체류 실적에 따른 포인트 적립 및 환급 등 인센티브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디지털관광주민증 운영 실태를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디지털관광주민증의 발급요건, 절차, 제2항에 따른 혜택 내용 및 제3항에 따른 디지털관광주민증 운영 실태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0조(권한의 위임·위탁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광협회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 연구·검사기관, 자격검정기관이나 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생략)

<신설>

1의2. (생략)

2. ~ 9. (생략)

④ ~ ⑥ (생략)

--.

1. (현행과 같음)

1의2. 제12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담여행사의 지정·갱신 심사

1의3. (현행 제1호의2와 같음)

2. ~ 9. (현행과 같음)

④ ~ ⑥ (현행과 같음)